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3.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 구미원예수출공사의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제3조)
 -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
- 사장후보의 추천 (제8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
 -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미시의회와 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중 “공사의 임·직원”을 “공사의 임·직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u>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u> 3. <u>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u>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u> 3. <u>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u> ② (현행과 같음) ③ <u>추천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u> 1. <u>경영전문가</u> 2. <u>경제관련단체의 임원</u> 3. <u>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u> 4. <u>공인회계사</u> 5. <u>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④ <u>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미시의회와 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공사의 임·직원</u> <u><신설></u>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1. (현행과 같음) 2. <u>공사의 임·직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u> 3. <u>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u>
제7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7조(회의) ① <u>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u> ⑤ <u>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u>